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대입 응시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에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8461호, 2021.9.24. 공포, 2022.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형대상 및 모집비율, 선발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대상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 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선발방식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4항 및 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사회통합전형 운영) ① 법 제3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 전형”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학교협의체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 ③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방대학의 장이 동법 제15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그 모집인원과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모집인원을 합한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동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4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 전형”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1호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하되, 동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 성적이 우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4조의2(사회통합전형 운영) ① 법 제3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전형”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학교협의체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②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방대학의 장이 동법 제15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그 모집인원과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모집인원을 합한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동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④법 제34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 한다.)은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제11호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하되, 동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 성적이
우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입학전형의 모집인
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65